

신혼부부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※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제출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주택서약서		접수 장소에 비치(인터넷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)
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-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신혼 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발급처 - 국민건강보험공단(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)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○	기본증명서	자녀	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비사업자 확인 각서	본인 또는 해당자	건본주택에 비치
대리인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, 본인발급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주민등록증 및 인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5.22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■ 소득입증 제출 서류

해당자격		발급처	소득입증 제출서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직장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,②,③ 해당직장	①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③ 재직증명서(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
	전년도 전직자	①,② 해당직장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해당직장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,② 세무서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세무서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(원본) 제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
	법인사업자	① 세무서 ② 등기소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,③ 해당직장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주민센터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
무직자	① 견본주택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	